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24
----------	-------

제출년월일 : 2022. 0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고, 내부 위원을 행정관리국장,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장에서 행정관리국장, 민원여권과장으로 축소(안 제11조)
- 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삭제(안 제3조)
- 다.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정비 (안 제6조)
 - 행정정보의 공표 →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 라.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안 제12조~제19조)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2조, 제12조의2

2)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2. 1. 27. ~ 2. 16. (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동의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4)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5)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6) 제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2.2.24.)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적용하며, 법령이나”를 “적용하며,”로 한다.

제6조 앞에 “제2장 행정정보 공표제도”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를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한다.

제7조 앞에 “제3장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을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을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5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5조로 한다.

제4장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5조(중전의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을 “**회의는 재적위원**”으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제16조(안건상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상정 요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여권과의 행정정보 공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행정정보 공개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18조(회의록의 작성 등) 심의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정보 공개심의회 안전상정 요청서 (제16조 관련)

수 신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심의회 위원장

참 조 : 민원여권과장

다음과 같이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을(를)
 이의신청처리

위하여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처리부서장)

1. 청구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2. 공개 청구 요지		
3. 안전상정 사유		
4.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5. 기 타		

- 첨 부 1. 심의 안전 ○ 부.
2. 정보공개 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부

행정정보 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제18조 관련)

심의안건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원장			(인)
부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 (제18조 관련)					
심 의 안 건					
일 시				장 소	
참 석 현 황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심 의 사 항					
심 의 결 과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장 총칙</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구의 조례로 설립하고 출연한 재단을 말한다.</p> <p>4. (생략)</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행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u><삭 제></u></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행정 기관, ----- ----- ----- -----.</p> <p>4. (현행과 같음)</p>
<p><u>제2장 행정정보 공표제도</u></p> <p>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② (생략)</p>	<p><u><삭 제></u></p> <p>제6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p>
<p><u>제3장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u></p> <p><u>제4장 정보공개심의회</u></p> <p>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p>	<p><u><삭 제></u></p> <p><u><삭 제></u></p> <p>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① -</p>

운영) ① 집행기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 서울특별시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신 설>

제11조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심의회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제1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심의회 의 운영) <신 설>

심의회 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 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신 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심의회 의 운영) ① 심의회 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

제16조(안전상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전을 상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상정 요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전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여권과의 행정정보 공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행정정보 공개업무

<신 설>

<신 설>

제13조 · 제14조 (생 략)

제5장 보칙

제15조 · 제16조 (생 략)

<신 설>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18조(회의록의 작성 등) 심의회
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
성 ·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
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다.

제20조 · 제21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삭 제>

제22조 · 제23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정보 공개심의회 안전상정 요청서(제16조 관련)

수 신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심의회 위원장
참 조 : 민원여권과장

다음과 같이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을(를)
(이의신청처리)
위하여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처리부서장)

1. 청구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2. 공개 청구 요지		
3. 안전상정 사유		
4. 처리부서의 검토이견 및 대립되는 견해		
5. 기 타		

첨 부 1. 심의 안전 ○ 부.
2. 정보공개 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이지현
연 락 처	02-3153-9917